



# 정 선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459호 2018. 10. 4. (목)

## 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18-161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· 고시.....3
- 정선군 고시 제2018-171호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.....4
- 정선군 고시 제2018-173호 2018년 정선군 수렵장 설정고시(안).....13

## 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8-987호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
.....19
- 정선군 공고 제2018-994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·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 
례안 입법예고.....25
- 정선군 공고 제2018-1013호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모집공고  
(안).....27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# 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18-161호

##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·고시

「산림보호법」 제15조(입산통제구역의 지정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(입산통제구역의 지정·해제)의 규정에 따라서 정선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·고시합니다.

2018년 9월 20일

정 선 군 수

### 1. 입산통제기간

- 가을철 : 2018. 11. 01 ~ 2018. 12. 15.
- 봄 철 : 2019. 02. 01 ~ 2019. 05. 15.

※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.

### 2. 통제구역 지정목적 : 산불예방, 산림보호

### 3.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내역 : “붙임” 참조

- 가. 입산통제구역 :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0번지 외 8376필 12,768ha
- 나. 등 산 로 : 32개구간 142.0km

### 4. 기타사항

- 가.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「산림보호법」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,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「산림보호법」 제5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
- 나.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및 화기, 인화물질·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「산림보호법」 제5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

다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  
어간 자는 「산림보호법」 제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
처분을 받습니다.

라. 입산통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므로 입산신고를 하지 않고 입산 할 수 있습  
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(033-560-2157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정선군 고시 제2018-171호

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

「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9월 28일

정 선 군 수

1.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표

구분	변경 전 (2018.09.30.까지)	변경 후 (2018.10.01.부터)	비고
기본요금	4km까지 1,100원	4km까지 1,100원	
관내요금	4km초과 시 km당 200원	4km초과 시 km당 100원	변경
관외요금	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	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	
대 기 료	1시간까지 무료, 초과 시 30분당 2,000원	1시간까지 무료, 초과 시 30분당 2,000원	
시설이용료 (주차료, 통행료 등)	이용자 부담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행료 면제	이용자 부담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행료 면제	
기 타 (관외 호출시)	타 지역에서 호출시 왕복이용료 부담	관내, 강원도내 콜 요청시 편도요금 징수	변경

2.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정선군 고시 제2018-173호

2018년 정선군 수렵장 설정고시(안)

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정선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0월 1일

정 선 군 수

1. 수렵장 개요

- 가. 수렵장 명칭 : 정선군 수렵장
- 나. 위치 : 강원도 정선군 일원(수렵금지구역 제외)
- 다. 승인인원 : 400명
- 라. 총 면 적 : 1,219.7km<sup>2</sup>
  - 수렵장 설정면적 : 895.8km<sup>2</sup>
  - 수렵장 제외면적 : 323.9km<sup>2</sup>

2. 수렵기간 : 2018. 11. 20 ~ 2019. 2. 28(86일간)

- ▶ 수렵금지기간 : 18일
- ▶ 2019.1.1(신정), 2.3~2.6(설연휴), 고드름 축제기간(10일), 군부대동절기훈련(3일)

3. 수렵 금지구역과 면적

- 가. 야생동물보호구역 : 0.32km<sup>2</sup>
- 나.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: 34.97km<sup>2</sup>
- 다. 백두대간 보호지역 : 60.46km<sup>2</sup>
- 라. 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: 2.52km<sup>2</sup>
- 마. 도시지역 : 42.58km<sup>2</sup>
- 바. 문화재보호구역 : 4.19km<sup>2</sup>
- 사. 자연휴양림, 산림유전자원보호림 : 128.1km<sup>2</sup>
- 아. 능묘·사찰·교회 또는 이에준하는 시설의 경내 : 0.12km<sup>2</sup>
- 자. 기타지역 : 50.3km<sup>2</sup>

## 4.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현황

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와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리소 명칭	소 재 지	전화번호
정선군청 (환경산림과)	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	033-560-2345
정선읍사무소	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31	033-560-2602
고한읍사무소	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	033-560-2612
사북읍사무소	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65	033-560-2622
신동읍사무소	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	033-560-2632
화암면사무소	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	033-560-2642
남면사무소	정선군 남면 칠현로 80	033-560-2652
여량면사무소	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	033-560-2662
북평면사무소	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	033-560-2672
임계면사무소	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	033-560-2682

## 5. 총기보관 장소 현황

관리소 명칭	소 재 지	전화번호	비 고
정선파출소	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36	033-560-5271	
고한파출소	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5	033-560-5276	
사북파출소	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49	033-560-5275	
신동파출소	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321	033-560-5278	
화암파출소	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68	033-560-5273	
남면파출소	정선군 남면 칠현로 45	033-560-5277	
여량파출소	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921	033-560-5272	
임계파출소	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59	033-560-5274	

※총기사용시간 : 일출 후부터 ~ 일몰 전까지

총기입·출고시간 : 정선경찰서 조치사항에 따름

## 6. 수렵장 사용료 및 수렵동물 포획수량(1인)

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※엽기개시일 부터는 수렵장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.

승 인 기 준 (수렵면허 종별)		기간별		기간별(천원)	
				엽기내	수용 인원
1종 수렵면허	적 색 포 획 승 인 권		500천원		
	포획승인수량 (확인표지 개수)	멧 돼 지 고 라 니 기타조수류	6개(마리) 4개(마리) 40개(마리)		210명
1종, 2종 수렵면허	청 색 포 획 승 인 권		200천원		
	포획승인수량 (확인표지 개수)	고 라 니 기타조수류	4개(마리) 40개(마리)		190명
수 용 인 원 합 계					400명

- \* 기타조수류 : 청설모, 꿩(수꿩), 멧비둘기, 참새, 오리류 5종(흰뺨검둥오리, 청둥오리, 쇠오리, 홍머리오리, 고방오리), 어치, 까치, 까마귀, 갈까마귀, 떼까마귀
- ※수렵동물 확인표지(Tag)는 포획한 야생동물 모두에 부착하여야 합니다.
- ※적색포획승인권은 1종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분실 및 훼손된 확인표지(Tag)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#### 7.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

가.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 (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)

- ▶ 입금 개시일 : 2018. 10. 17.(수) 09:00부터
- ▶ 입금 마감일 : 2018. 10. 25.(목) 18:00까지

나. 포획승인 신청기간

- ▶ 신청 개시일 : 2018. 10. 17.(수) 09:00부터
- ▶ 신청 마감일 : 2018. 10. 25.(목) 20:00까지

※경찰청 「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」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(2018.10.25일 20:00시까지)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다. 수렵장사용료 납부(입금) 유의사항

- ▶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,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 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▶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,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·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.
- ▶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,

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

▶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※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.

라.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

【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,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(예:60.11.20)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.】

▶ 적색포획승인권 (50만원/1인 제한)  
농협 301-0238-2694-11 (210명 선착순 입금제한)  
(예금주 : (사)야생생물관리협회 정선군 적색)  
※주의)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.

▶ 청색포획승인권 (20만원/1인 제한)  
농협 301-0238-2702-91 (190명 선착순 입금제한)  
(예금주 : (사)야생생물관리협회 정선군 청색)  
※주의)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.

마. 포획승인신청 방법

▶ 신청기간 : 2018.10.17일(수) 09:00시부터 2018.10.25일(목) 20:00시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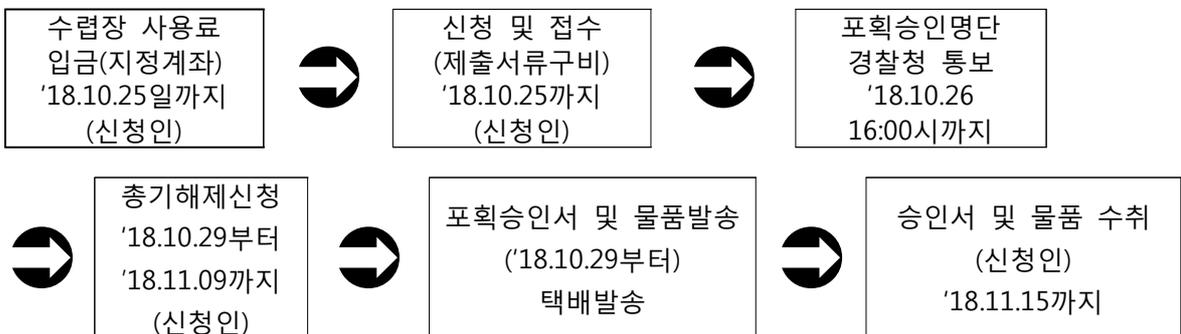
▶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

▶ 제출서류

-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(# 첨부 1)
- ②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
-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
- ④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

▶ 처리절차

① 팩스(FAX) 접수 및 발급 절차



※포획승인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, 원본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.

② 방문접수 및 발급 절차 (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)



※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▶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정선군 홈페이지 **【<http://www.jeongseon.go.kr>】**
-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**【<http://www.kowaps.or.kr>】**

▶ 접수처

① 팩스접수

- 적색포획 승인 신청서 033-811-1062
- 청색포획 승인 신청서 033-811-1064

② 연 락 처 : 033-461-4010(대표전화)

③ 방문접수 :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(강원도 춘천시 스무숲1길 32-12 1층)

▶ 포획승인신청이 완료되면 반드시 수렵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'18.11.9일까지 수렵총기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8. 총기보관 해제 및 이송 등 “경찰청” 조치사항

가. 경찰청 「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」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 경찰서에서 방아쇠 잠금장치를 한 후 수렵인(승인자)이 직접 수렵장 총기보관소로 이송합니다.

나. 수렵장에서 타 수렵장으로의 총기이동은 불가능합니다.

다. 총기보관해제신청은 2018.11.9(금)까지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라. 포획승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2018. 10. 26일까지 경찰청에 통보함으로 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 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마. 수렵총기의 해제 신청은 수렵장마다 2정까지 가능하나,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

동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됩니다.

바. 복수(여러 곳)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(예: 정선군, 진천군, 보령시의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3정의 총기소기허가 및 총기보관해제신청이 필요합니다.)

사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」 제54조의3 제4호에 따라 “수렵장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‘수렵’ 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” 하여야 합니다.

※위 경찰청 조치사항의 상세내용은 경찰청 생활질서과(02-3150-1375) 또는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(033-560-534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9. 확인표지(Tag) 및 포획야생동물의 신고 등

가.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(Tag)에 포획일시·장소 등 기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확인표지(Tag)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.

나.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

다.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(Tag)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#### 10. 기타 안내사항

##### 가. 포획승인 취소 등

- ▶ 확인표지(Tag)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
  - ▶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
  - ▶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
  - ▶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
  - ▶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
  - ▶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
  - ▶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
- ※포획승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 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##### 나. 수렵제한

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.

[ 「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5조(수렵제한) ]

- ▶ 시가지,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
- ▶ 해가진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

- ▶ 운행 중인 차량, 선박 및 항공기
- ▶ 「도로법」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,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
- ▶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,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
- ▶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
- ▶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. 다만,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
- ▶ 그 밖에 인명, 가축, 문화재, 건축물, 차량, 철도차량,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

#### 다. 수렵인의 준수사항

- ▶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.
- ▶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▶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, 축사 주변 등 인명·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▶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.
- ▶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정선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▶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정선군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▶ 전화, 통신케이블,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▶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.
- ▶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.
- ▶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킵시다.
- ▶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.

#### 라. 수렵관련 벌칙 규정

##### 【벌 칙】

- ▶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 -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(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)
  -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(제44조제1항 위반)
  -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(제50조제1항 위반)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-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(제54조 위반)
  -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 (수렵기간을 제외한다)을 위반한 자(제43조제2항 위반)
  -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(제8조 위반)

**【과 태 료】**

-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- 공무원의 출입·검사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(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)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- 수렵동물의 종류·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(제19조제4항 위반)
  -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(제50조제2항 위반)
  -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(52조 위반)

**마. 수렵장 총기 안전 수칙**

총기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기 바랍니다.

-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.  
(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)
-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.  
(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 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)
-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.  
(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)
-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.  
(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)
-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을 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. (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)
-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.  
(유탄 또는 낙하탄에 인한 피해 방지)
-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.  
(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)
- 강이나 바다에 얹어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.  
(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)
- 운행 중인 자동차, 선박,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.  
(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)

-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  
(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과열사고 방지)
-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  
(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)
- 야간,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.  
(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)
- 수렵인, 수렵안내원,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. (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)
- 전기,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.  
(실탄에 의한 전기·통신시설의 피해 예방)
- 수렵이 종료되면 정선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.

**【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정선경찰서의 조치사항에 따라야 합니다.】**

※입출고 시 장전여부 등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, 음주상태로 총기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.

# 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8-987호

##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9월 20일

정 선 군 수

### 1. 개정이유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를 정비하고,
- 「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“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개정(안 제4조제2항)
  - 「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」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한 군수 자문 규정 삭제
-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된 조문 개정(안 제5조제1항)
  - 문법상 오류에 따른 문구 수정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정비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8. 9. 20. ~ 2018. 10. 11.

4. 제정조례안 : 「붙임」

### 5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참조: 보건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의견 제출 및 문의처

- 주 소: (우)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
- 전 화: 033-560-2736
- 팩 스: 033-563-4000
- 이 메 일: nayeoun71@korea.kr
- 홈페이지: <http://www.jeongseon.go.kr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[붙임]

조례 제 호

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”를 “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집단으로 하여금”을 “집단이”로, “교육”을 “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개선시키”를 “개선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13인이내”를 “13명 이내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협의를”을 “협의회의”로 한다.

제6조 단서 중 “전임자의 잔임기간”을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 안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업무관련담당주사”를 “업무관련 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</u>	<u>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</u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보건교육 : 개인 또는 <u>집단으</u> <u>로 하여금</u> 건강에 유익한 행 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<u>교 육</u> 을 말한다.	2. ----- <u>집단이</u> ----- ----- -- <u>교육</u> -----.
3. 영양개선 :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 을 <u>개선시키</u> 는 것을 말한다.	3. ----- ----- - <u>개선하</u> -----.
제3조(구성)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<u>1인</u> 을 포함한 위원 <u>13인이내</u> 로 구성한다.	제3조(구성) ①----- -----1명----- <u>13명</u> <u>이내</u> 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<u>각호</u> 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에 의한다.	제4조(기능) ----- <u>각 호</u> -- ----- 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</u> <u>조 규정의 심의 사항</u>	<삭 제>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회의) ①회장은 <u>협 의</u> 는 의	제5조(회의) ①----- <u>협 의회</u> 의 --

장이 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6조(임기) 회의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수당 및 여비)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(생략)

②간사는 업무관련담당주사가 되고,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임기) 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-----.

제7조(수당 및 여비) -----  
----- 범위안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업무관련 담당주사-----  
-----  
-----.

제9조(운영세칙) -----  
- 관-----  
-----.

정선군 공고 제2018-994호

**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「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9월 21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의 올바른 기재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, 「지역보건법」 개정(2017.9.19.)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과태료 부과·징수의 근거 법 수정(안 제4조, 제6조)
  -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및 「행정절차법」 → 「행정절차법」 삭제
  - 지방세 징수의 예 →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으로 변경
-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법 조항의 반영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[별표])
  -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 → 제23조 개정
  - 「지역보건법」 제21조 → 제29조 개정
  - 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 → 제34조 개정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8. 9. 21. ~ 2018. 10. 12.

4. 제정조례안 : 「붙임」

5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참조: 보건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의견 제출 및 문의처

- 주 소: (우)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
- 전 화: 033-560-2857
- 팩 스: 033-563-4000
- 이 메 일: nadabue@korea.kr
- 홈페이지: <http://www.jeongseon.go.kr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[붙임]

조례 제 호

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18조”를 “제2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21조”를 “법 제29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다른 과태료”를 “의한 과태료”로, “법 제26조제1항”을 “법 제3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및 「행정절차법」”을 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, 신용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세징수법」을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----- ----- -----.		
제2조(부과대상)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	제2조(부과대상)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	제2조(부과대상) ----- ----- -----.		
1.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	1.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	1. ----- ---- 제23조----- -----		
2.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	2.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	2. 법 제29조 ----- -----		
제3조(부과기준)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	제3조(부과기준)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	제3조(부과기준) 법 제34조제1항----- -----의한 과태료----- -----.		
제4조(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)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및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.	제4조(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)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및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.	제4조(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) -- -----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----- -----.		
제6조(준용규정)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	제6조(준용규정)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	제6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, 신용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세징수법」을 따른다.		

[별표]

## 과태료 부과기준 (제3조 관련)

## 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
나.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 별로 동일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.

## 2. 개별기준

부 과 대 상	근 거 법 령	부과금액(만원)		
	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
1.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	법제34조제1항제1호	100	200	300
2.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	법제34조제1항제2호	100	200	300

정선군 공고 제2018-1013호

**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모집공고(안)**

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「여성친화 기업 환경 개선사업」 지원기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1일

정 선 군 수

1. 사 업 명 : 여성친화 기업 환경개선사업

2. 사업개요 :

- 목 적 :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
- 지원기준 : 1개 기업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% 까지 지원
- 우선지원대상
  - 상시 근로자 수 5~300인 미만으로서
    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연계자)포함 최근 1년간 2명이상, 2년간 3명이상 업체
    -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
  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- 개선대상 : 여성화장실, 여성휴게실, 수유실 등 시설환경개선
  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우 사업체 초기세팅을 위한 물품 지원 가능(최초 1회만 가능)
  -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80%이상인 경우,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비용 지원 가능

**<지원 가능 물품>**

- 화장실에 필요한 수납장
- 샤워실에 필요한 사물함, 온수기
- 휴게실(탈의실)에 필요한 침대, 사물함(또는 옷장), 탁자, 의자
- 임시 놀이방에 필요한 탁자, 의자, 유아용침대
- 수유실에 필요한 침대, 수유기, 탁자, 의자
-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

※ 환경개선 제외 사업장

- ①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
-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(예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)
- ③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,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
- ④ 동거의 직계 준비속, 배우자, 형제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
- ⑤ 숙박, 음식 업종 사업체(다만, 호텔업, 휴양 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⑥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
### 3. 공고기간 및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가. 공고기간 : 2018. 10. 1. ~ 10. 10. (10일)

나. 접수기간 : 2018. 10. 1 ~ 11. 30. ※ 근무시간(09:00 ~ 18:00)으로 함.  
(토·공휴일 제외)

다. 교부방법 : 정선군 홈페이지(<http://www.jeongseon.go.kr>)

「고시/공고」에서 직접 다운로드

라. 접수장소 :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(정선군 여성회관 1층)

※ 직접 방문하여 접수 (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)

### 4. 대상기업 선정 및 발표

가. 선정방법 :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선정

나. 선정기준 : 여성고용 및 여성친화지수 등 종합적 검토

다. 선정절차 :

- 신청기업 자격요건 등 서류심사
- 기업 현장 직접 방문 개선 계획시설 확인 점검

라. 심사결과 발표 : ∷ 개별통지

### 5. 제출서류 (붙임 서식 참조)

가. 여성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.

나.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(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)1부.

다.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1부.

라. 여성친화진단 측정지표 1부.

마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바. 환경개선비용 견적서 1부.

### 6. 기타사항
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조하거나, 정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(☎033-560-275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